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(올림픽대로~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)

- 점검일시 : 2018.08.23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수엽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종점부 U타입 구간 현치부 거푸집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가설계단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(계단의 난간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진입램프 종점부 U타입 및 L형 옹벽 연결부 구간 흠막이 상부 배면에 설치된 작업구간은 근로자들이 작업 시 흠막이 하부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주변에 안전난간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후 작업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등의 방호조치)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진입램프 종점부 U타입 구조물 공사를 위해 바닥구간에 설치된 거푸집 고정핀은 근로자들이 이동시 걸려 전도의 위험이 있으니 거푸집 철거 즉시 제거바람.  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진입램프 종점부 U타입 1번구간의 거푸집 설치구간으로 내려가는 경사부 및 자재적치구간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자재정리 및 가설통로를 확보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올림픽대로 및 현장에 설치된 PE방호벽은 태풍에 대비하여 물채움등을 실시하고, 서로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보완 및 기존 도로시설물에 결속해 놓은 PP로프도 일정강도가 나올수 있는 두께로 보완하기 바람.



○ 전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진입램프 시점부 자재 적치장에 쌓여있는 원형 강재 거푸집등 자재는 결속상태를 보완하여 태풍에 대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